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가단54329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이동훈, 서영은

피고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찬중

담당변호사 홍정익

변론 종결2024. 9. 11.

판결 선고2024. 10. 30.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조합원 지위 목록 기재 순번 1에 관하여,

-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21. 9. 30.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D 투자조합에게 위 1.항 기재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1,065,549,997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1. 9. 30. 피고에게 [별지] 조합원 지위 목록 순번 1번 D 투자조합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위 2021. 9. 30.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 투자조합에 위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536 판결,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주식회사 C에 1,065,549,997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중 200,000,000원을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C에 2019. 6. 10. 180,000,000원을, 2019. 9. 18. 500,000,000원을, 2019. 9. 18. 375,000,000원을 각 대여한다는 취지의 각 대출계약서[위 각 대출계약서 기재 대여금 채권의 원금 합계는 1,055,000,000원(= 180,000,000원 + 500,000,000원 + 375,000,000원)이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대출계약서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C와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주장은 주식회사 C에 63,014,81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1,05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은 모두 변제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전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거래 내역도 찾아보기 어렵다. 즉,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음에도, 원고는 주식회사 C에 지급하였다는 자금의 출처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 C에 위 돈을 송금하거나 이자를 지급받아왔다는 등의 차용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원고의 사내이사였던 E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F은 2020. 11. 15. '1) 주식회사 C가 원고의 전 대표였던 G과 미등기이사인 H의 지시로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C가 입금받은 4,425,000,000원이 주식회사 C의 대여금 및 투자금이 아니며, 2) 원고의 전 대표 G과 미등기이사 H가 원고의 자금을 유용하여 주식회사 C의 법인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I(4,527,418,248) 입금지시 3) 원고의 전 대표 G과 미등기이사인 H가 상장사 지급보증을 위한 계획임을 원고의 현 대표 및 임직원들이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 따라서 원고는 전 대표 G과 미등기이사 H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C가 원고에 자금을 받아 I으로 이체했기 때문에 추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 그리하여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I에 대한 자금이체건 및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함.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입금받은 4,425,000,000원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I(4,527,418,248)에 대한 모든 자금이체건 및 채권양도함과 동시에 원고와 주식회사 C의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였고, 위와 같은 경위로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어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J 등부 2020년제1170호로 공정증서(을 제4호증)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설령 원고가 주식회사 C에 입금한 내역이 있더라도 갑 제3호증의 각 대출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그 상당의 돈이 대여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에 송금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위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주식회사 I에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지 주식회사 C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 금원으로 보인다.

○ 원고 역시 '주식회사 C는 원고의 다른 채무자들과 전혀 성격이 다른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C는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2019년도부터 상장사인 주식회사 I를 인수하기 위해 자금을 이전(소위 '롤링')하는 허브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식회사 K은 'L펀드'를 통해 여러 회사들에게 자금을 대출한 후, 위 차주사들이 수령한 금전을 주식회사 C에 지급하고 주식회사 C는 이를 상장사 주식회사 I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I의 경영권을 인수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C는 위 자금 롤링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회사로 민·형사상 가장 책임이 막중하였던 회사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원고의 2024. 7. 15.자 준비서면 참조).

다. 채무초과상태 여부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1. 9. 30. 당시 주식회사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민정

별지